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일자	2019년 10월 8일
	문의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0-6214-3550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4번째 평가와 권고이다.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란다.

의견존중,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와 3·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근절·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다.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 조치임을 밝힌다.

이번 심의 중,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위원회는 구체

적으로 사교육의존을 감소시키고, 선행학습금지의 준수를 감시하며, 이주·지역·장애·난민아동 등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주문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 위원회의 언급처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적을 전환하지 않고는 학교 안팎에서 위와 같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하다.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하였고,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시켜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하라.

2024년에 예정된 7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아동인권현실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붙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 1. 제정연대 소개

###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 2) 주요 목표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청소년인권,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 청소년, 입시공부가 아닌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자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표현의 자유·정당활동의 권리·주민발의권을 보장하라

### 만18세는 너무 늦다, 청소년을 유권자로

선거/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하향하라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목록과 인권보장체계를 담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행위 명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육청에 권리회복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 1) 참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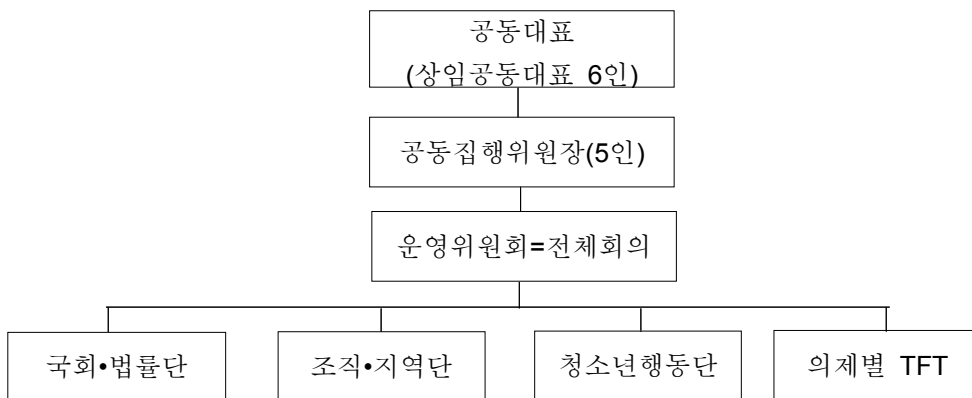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9.07.04 현재 374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 교육공동체나다 / 교육공동체 벗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녹색당 / 녹색당 서울시당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 대한청소년연맹 /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 문화행동 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 민주청소년연대 / 사단법인 두루 / 사)들꽃청소년세상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세이브더칠드런 / 어린이문화연대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이리이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정책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회교사모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교조 세종지부 / 전교조 인천지부 /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 전북인권교육연구회 /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정의당예비당원협의회 '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흥성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민중당 / 청년좌파 / 청년참여연대 / 청사조롱-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리포럼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 청소년주권회의 /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튜립연대(준)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향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흥

전골프장대책위,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흥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은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울산연대**(교육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풀뿌리주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순천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실/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숨/전국공무원노동조합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교수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흥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북

## 2) 조직체계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광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리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김수정(민변/법무법인 지향), 나명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미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장영인(전교조)
- 국회·법률단 : 법률안 마련, 국회·정부 대응, 입법과정 모니터 등
- 조직·지역단 : 단체별·지역별 활동 지원과 소통, 시민 참여 토론회·강좌 등 기획
-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 기획, 청소년 참여 조직
- 의제별 TFT: 의제별, 시기별 상황에 따라 특별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여 운영

###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협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 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쫓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서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예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체절차 명시 등